

감정평가서

건명	이신영 소유물건 (2025타경55900/경매17계)
번호	제일 HA25061001호

의뢰인 : 수원지방법원
사법보좌관 최원학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(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(改作), 전재(轉載)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경기남부지사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(송죽동 신성빌딩 6층)
TEL. (031)269-7172 FAX. (031)269-7122

(자동차)감정평가표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.

감정평가사 조준묵

(인)

(주)제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정영록 (서명 또는 인)

감정평가액	일천만원(₩10,000,000.-)					
평가의뢰인	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원학		감정평가 목적	경매		
			제출처	경매17계		
소유자 (대상업체명)	이신영 (2025타경55900)		기준가치	시장가치		
			감정평가조건	-		
목록표시근거	귀 제시목록, 자동차등록증 등		기준시점	조사기간	작성일자	
			2025. 06. 17	2025. 06. 17	2025. 06. 18	
감정평가내용	공부(公簿)(의뢰)		사정		감정평가액	
	종류	면적 또는 수량	종류	면적 또는 수량	단가	금액
	자동차	1대	자동차	1대	-	10,000,000
			이하	여백		
	합계					₩10,000,000.-
심사확인	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.					
	심사자: 감정평가사				(인)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. 대상물건 개요

1. 평가목적

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소재 '상안교차로' 남서측 인근에 보관중인 자동차(제네시스, 대형 승용)로서, 수원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.

2. 평가기준

본 감정평가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.

3. 감정평가 대상 물건

일련 번호	차명과 차종	등록번호	최초등록일	연식	주행거리 (km)	관리상태	연료/변속기	비고
1	제네시스 (대형 승용)	63수5149	2015.01.29	2015	150,948	보통	휘발유/자동	-

※ 상기 주행거리는 기준시점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임.

4.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6월 17일 임.

5.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

실지조사는 2025년 06월 17일에 수행하였으며,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조사·확인하였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6.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

1)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.

2)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

없 음.

7. 기타 참고사항

- ① 평가대상은 귀 제시목록,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등에 의거하였음.
- ② 평가대상은 기준시점 현재 후첨 “사진용지”와 같이 좌우측 전면 범퍼 및 펜더 부분에 흠집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- ③ 평가대상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상 보험사고이력 중 “전손·도난·침수 보험사고 없음”, “특수용도 이력 있음”, “내차 피해 5회(13,276,486원)”, “상대차 피해 4회(4,830,820원) + 미확정”, “소유자 변경 3회”, “차량번호 변경 1회”로 확인되는 바,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.

[출처 :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(정보조회일자: 2025.06.13.)]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I.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

1.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<p>제7조(개별물건기준 원칙 등)</p> <p>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(감정평가방식)</p> <p>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원가방식: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2. 비교방식: 거래사례비교법,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3. 수익방식: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
<p>제12조(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)</p> <p>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(이하 “주된 방법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. 다만,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(算定)한 가액[이하 “시산가액(試算價額)”이라 한다]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(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)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. 다만,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
<p>제14조(토지의 감정평가)</p> <p>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.</p>
<p>제15조(건물의 감정평가)</p> <p>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.</p>
<p>제26조</p> <p>①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p>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

- ① 대상물건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7조 제1항에 의해 개별로 감정평가 함.
- ② 자동차는 차종, 형식, 연식, 주행거리, 관리상태, 거래시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감정평가 하였음.

3. 일괄·구분·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

없 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II. 자동차 감정평가액 산출과정

1. 감정평가 대상 물건 개요

일련 번호	차명과 차종	등록번호	최초등록일	연식	주행거리 (km)	관리상태	연료/변속기	비고
1	제네시스 (대형 승용)	63수5149	2015.01.29	2015	150,948	보통	휘발유/자동	-

2. 유사물건 평가전례

기호	차명	제작일자	주행거리 (km)	평가금액 (원)	평가 목적	기준시점	비고
1	제네시스	2016	121,435	12,000,000	경매	2024.11.12	-
2	제네시스	2015	186,513	11,000,000	경매	2024.02.19	-

3. 유사물건 시세수준

유사 차량 시세 수준	약 10,000,000원 내외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IV. 그 밖의 사항

없 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V.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

1. 감정평가액

구 분		감정평가액 (원)	비 고
자동차	일련번호 1	10,000,000	-
합 계		10,000,000	-

2. 결정의견

평가대상 자동차의 차종, 형식, 연식, 주행거리, 관리상태, 거래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.

자동차 감정평가명세서표

[기준시점 : 2025-06-17]

일련 번호	차 종 과 차 명	등록 번호	차체	년 식 (형 식)	적재량 (정 원)	차 대 번 호	제 작 소 및 등록일자	감정평가액	비 고
			기관	정격출력 (배 기 량)	연 료 (기통수)	원동기형식			
1	대형 승용 제네시스	63수 5149	차체	2015 DH4DBC-L8P	- (5명)	KMHGL41DB FU078786	현대자동차 2015.01.29	10,000,000	비준가액
			기관	282Ps/6000rpm (3342cc)	휘발유 (6기통)	G6DH			
합 계								₩10,000,000.-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 이 하 여 백 </div>									

자동차감정평가요항표

1. 년식 및 주행거리

3. 관리 상태

5. 유효검사기간

2. 색 상

4. 사 용 연 료

6. 기타(옵션등)

1. 년식 및 주행거리

연식 : 2015 (최초등록일: 2015.01.29)

주행거리 : 기준시점 현재 계기판상 '150,948km'임.

2. 색상

차량의 색상은 '회색'임.

3. 관리상태

관리상태는 보통임.

4. 사용연료

사용연료는 '휘발유'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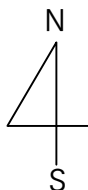
5. 유효검사기간

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 유효기간은 '2025.01.29 ~ 2027.01.28'임.

6. 기타(옵션등)

옵션: 자동변속기, 버튼식 시동시스템, 내비게이션, 후방카메라 등임.

위 치 도



보 관 장 소	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350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

사 진 용 지



[대상물건(전면)]



[대상물건(후면)]

사 진 용 지



[대상물건(센터페시아)]



[대상물건(계기판)]

사 진 용 지



[대상물건 우측전면(흡집부분)]



[대상물건 좌측전면(흡집부분)]

'신뢰와 공정으로 고객과 함께 여는 100년'



문서번호 제일 HA25061001호 (2025. 06. 18)

수신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원학

(참조) -

제목 감정평가회보

1.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우리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. 관련문서 2025. 06. 10자 귀 제 2025타경55900(경매17계)호로 의뢰하신 『이신영 소유물건(2025타경55900/경매17계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합니다.

3.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(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)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을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필요사항: 사업자등록증사본, 담당자성명, 유무선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)

붙임: 1. 감정평가서 1부
2. 청구서 1부 끝.

(주)제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

담당감정평가사 조준묵

주소 (16305)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(송죽동 신성빌딩 6층)

전화 031-269-7172 / 팩스 031-269-7122

jaeil17@kapaland.co.kr

수수료 청구서

감정평가서번호 : 제일 HA25061001호

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원학 귀하

—금사십칠만삼천원정 (₩473,000.—)

1. 2025.06.10자 귀 제 『2025타경55900(경매17계)』 호로 의뢰하신 『이신영 소유물건(2025타경55900/경매17계)』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'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'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청구내역-

과목	금액	비고
가. 평가수수료	290,000	
나. 여비	133,000	
토지조사비	-	
물건조사비	-	
공부발급비	-	
기타실비	7,000	
특별용역비	-	
소계	140,000	
합계	430,000	
부가가치세	43,000	
총계	473,000	
기납부착수금	-	
정산청구액	₩473,000.—	

※ 위 금액을 아래 구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 (HA25061001)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합계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하였습니다.

★ 계좌번호 ★

신한,북수원(남부지사) 140-007-361141 예금주: (주)제일감정평가법인

(주)제일감정평가법인
경기남부지사장 정영록

(TEL : 031-269-7172 FAX : 031-269-7122)

[공급자(사업자)등록번호 : 135-85-35869]